

(가칭)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사업 대행계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에 의거 ‘(가칭)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공간 환경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센터 공간 환경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행사업 수행자인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역) 시가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환경 조성 사업”
2. 총사업비 : 금1,500,000,000원(금일십오억원)
3. 사업내용

사업구분		주요 사업내용
공간 환경 조성	인테리어 설계·시공	설계(기획·기본·실시), 디자인 감리, 보안시스템 구축, 시공
	정보시스템 구축	센터 안내 및 정보 공유 페이지 구축(재단 홈페이지 내)
	장비 구매·구축	공용작업실 장비 구매·구축 및 지원 소모품 구비
시설 운영 준비	홍보 및 BI 개발	입주기업 공모, 센터 개관 전 온·오프 홍보, BI 개발 및 적용
	운영프로그램 개발·구축	입주기업·예비창업자 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등

제3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대행한다.

1. 사업의 시행 및 감독

2. 기타 시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재단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우선 책임을 진다.

④ 재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시는 적극 지원 또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기한) 재단은 사업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하에 사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등) ① 재단은 세부사업별 공사 착수시마다 시에 통보하고, 매분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중순 이전에 시에 보고한다.

② 사업의 관리 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제2조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한다.

1. 계획 수립, 법률 검토 및 자문, 사업자 공모, 설계·시공·감리 용역 시행 등 사업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관리, 결과 검수 등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 사업비

3. 기타 사업 시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단, 사업비 청구는 '전(前)분기 집행현황 및 당(當)분기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분기 시작월 15일 이전에 한다. 다만, 사업비 지급 시기는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재단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의 정산시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내역을 포함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자와 잡수입을 포함한 전액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정산 기한 내에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시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 관련 도서의 보관) ① 재단은 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를 종이 및 컴퓨터 파일(.hwp, .dwg, .pdf 등) 문서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 정산시에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사업** 수행 중 생성된 모든 문서의 .pdf파일 1세트를 시에 제출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 관련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나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① 재단이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사업 현장 관리의 책임당사자인 재단이 부담하며, 동 사고가 계약 양 당사자 누구에게도 귀책되지 않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 등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에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재단”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② 계약이 제①항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재단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가 재단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등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정산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시와 재단이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5. 3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대표이사 최 경 란 (인)

